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 - (2) 소멸시효 기간 연장

개정 상법(보험편)(이하 “현행 상법”이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 전 상법”이라 합니다)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리걸업데이트를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 상법의 내용 중 소멸시효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개정 전 상법	현행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u>2년간</u> , 보험료의 청구권은 <u>1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u>3년간</u> ,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u>3년간</u> , 보험료청구권은 <u>2년간</u>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전 상법에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이었고,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러한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개정 전 상법에서도 현행 상법 제662조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점과 보험금청구권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현행 상법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여전히 종래 판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소멸시효 연장 조항의 적용시기

현행 상법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바, 현행 상법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현행 상법의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현행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그러나 현행 상법 부칙에서는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한 현행 상법 제 662조의 적용시기에 대해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현행 상법 부칙 제2조 제4항). 해당 부칙 조항에 따르면, 현행 상법 이전에 체결된 기존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청구권이 현행 상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현행 상법에 따라 연장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현행 상법 부칙 제2조 제4항).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04 | E-Mail. leesh@shinkim.com |
| ● 백상미 변호사 | TEL. 02 316 4226 | E-Mail. smbak@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